

2008 AI 발생평가 및 방역개선대책

I. AI 발생 및 방역 상황

1. 4. 1일 김제에서 처음 발생한 후, 5. 12일 경산·양산까지 11개 시·도 19개 시·군·구에서 총 33건 발생

○ 2003년 및 2006년 발생 사례에 비해 발생건수는 증가했으나 발생 기간은 크게 감소

2003/2004년	2006/2007년	2008년
2003.12.10~2004.3.20(102일간) 10개 시·군에서 19건 발생 ※ 발생신고 56건	2006.11.22~2007.3.6(104일간) 5개 시·군에서 7건 발생 ※ 발생 신고 24건	2008.4.1~5.12(42일간) 19개 시·군·구에서 33건 발생 ※ 발생 신고 68건

2. AI 발생 지역은 SOP에 따라 이동제한 해제 등 방역조치 해제

- 19개 시·군·구 중 6. 29일 부산 강서·기장 및 경북 경산을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
- 전국적으로 이동제한이 해제된 6. 29일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발령하였던 위기경보 “경계” 단계 해제

3. 2008년 발생은 단기간 전국적 확산 등 2003년, 2006년과 다른 양상

- 시기적으로 특별대책기간(11월~2월)이 지난 봄(4월)에 발생
- 과거에는 오리의 폐사율이 매우 낮았으나 금년에는 높아졌음.
- 토종닭의 경우 2003년도는 19건 중 1건, 2006년도는 없었으나, 금년에는 전체 발생 33건 중 12건으로 36% 차지
- 재래시장을 통한 가든, 도시지역 소규모 사육시설에서도 발생

4. 소요예산(7. 18일 기준)

- 2,641억원(보상금 669, 생계비 18, 구매 733, 경영안정 1,221)

평택·안성, 경북 경산, 경남 양산 지역 (23건, 전체 발생의 70% 차지)

- 재래시장에서 오염된 닭·오리 등을 구입하거나 영세수집상을 통해 전파(소규모 사육 가든식당·가정·동물사 등 발생형태)

II. AI 유입경로 및 확산 원인

1. 발생원인은 「역학조사위원회」 중간조사결과 2003년, 2006년과 같이 철새에 의한 유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잠정 결론

-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금년에 분리된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분석결과 동일한 것으로 판명
→ 두 나라가 동일한 바이러스에 의해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것으로 볼 때 양국의 공통 유입원으로 철새가 될 수 있음.

- 중국, 베트남 등 발생국 여행객 또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 의한 유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역학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2008. 9월 나올 예정

2. 국내 확산요인 및 경로(추정)

- 같은 회사 사료차량, 출하 유통업자, 닭수송차량 등을 통해 전파(전문 닭·오리 사육농장 발생형태)
- 전북 김제·정읍지역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발생한 전남 영암, 충남 논산, 경기

- 경기 안성·미양, 울산 울주, 경북 영천, 대구 수성, 서울 광진·송파, 강원 춘천, 부산 강서·해운대·기장 지역(10건, 전체 발생의 30% 차지)

- 금년 4월경 전남·북 지역에서 감염된 오리가(증상이 나타나기 전) 재래시장 또는 재래시장에서 가든식당으로 팔려나가는 과정 중 토종닭이나 꿩에게 옮겨진 것으로 추정

III. 주요 방역조치 사항

1. AI 긴급대응체계 운영 및 방역조치 수행에 있어 유관기관 단체간 긴밀한 협조 유지

-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 “AI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 가축방역협의회(8회), 떡거리 안전확보 T/F(7회), 당·정협의(2회), AI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방역대책 협의

2. 「AI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절차(SOP)에 따라 방역조치 수행

- 발생지역 닭·오리 등 가금류 매몰 처분

- (8,460천수) 완료 및 인접지역 이동제한을 통한 통제초소(399개소 2,679명) 운영
-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주의”(4. 3일), “경계”(4. 11일) 경보 발령

3. 방역취약지대 방역강화조치 실시

- 닭·오리를 판매하는 재래시장 가금류 시설 폐쇄·사용제한
- 재래시장 등에 닭·오리를 공급하는 유통상인 소유의 가금류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및 관련 수송차량 세척·소독 실시
- 닭·오리 사육농가 및 가든식당 일일 전화예찰
- 도축장 출하 닭·오리의 임상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
- 닭·오리 분뇨의 농장밖 반출 제한 및 계분 비료공장·운반차량의 소독 실시 단속

4. 전국 오리농장 AI 검사 및 지도·단속 강화

IV.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1. AI 발생 사전대비 미흡

- 2003년, 2006년 발생사례를 기준으로 AI 유입, 위험시기와 경로를 ‘동절기 북방철새20’로 설정함으로써 특별방역 공백 발생
 - AI가 연중 발생하는 중국 남부와 동남

아에서 겨울을 지낸 철새들이 봄철에 한반도를 경유하여 북상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

- 소규모의 닭·오리가 사육·거래되는 재래시장 및 관련 유통업자 등에 대한 방역 관리 소홀

2. 초기대응 미흡

- 방역규정상 의심축 신고 후 확진시까지 (보통 5~10일 소요) 가금류 등 이동통제 공백 발생
- 일부 지역의 경우 발생초기 형식적인 이동통제초소 운영으로 AI 오염 우려 가금(산물) 타지역 유출
- 방역활동이 주로 전문사육농가에 치우쳐 토종닭·오리 거래 재래시장과 관련 수송차량은 방역대상에서 누락

3. 가금류 사육농가의 방역의식 미흡

- 위험지역내 가금류 불법 반출, 의심축 신고 직전 사육가금류 무단반출 등 방역의식 미흡
- 살처분 농장의 농가들이 보상 등을 이유로 몰려다니거나 방역지역을 벗어남으로써 병원체 전파 요인으로 작용
- 살처분·통제초소 운영 참여, 농장내 자율적인 차단방역 활동 미흡으로 단기간 내 확산요인으로 작용

V. 개선방안 및 향후대책

기본방향

- 동절기 특별방역 → 연중 상시 방역
 - 농가 신고에 의존하는 수동적 예찰
 - 정부가 미리 검색해 내는 능동적 예찰
 - ※ 북방철새 도래시기(10~11월) 및 통과시기(3~4월) 방역집중 홍보
- 초동방역능력 강화로 발생시 신속대응 및 조기근절
- AI 검진능력 제고, 제도개선 등을 통한 방역능력 선진화

1. 연중 상시방역으로 발생위험 최소화

- 1) 국내 유입가능 경로별 AI 예찰로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 AI 병원체의 잠복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종오리,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검사 강화 (분기별 1회 이상)
 - 철새 도래시기 및 통과철새 출현시기를 감안하여 야생조류(철새 및 텃새) 포획 또는 분변 검사
 - 고병원성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 H5/H7형 저병원성 AI 예찰 강화 및 양성농장 예방적 살처분
- 2) 과거 발생지역, 재래시장 등 재발 위험 지역 방역관리 강화
 - 과거 AI 발생 지역(23개 시·군)의 가금류 농가 임상예찰

- 북방철새 도래시기(10~11월) 및 철새 통과시기(3~4월)에 최소한 주 1회, 기타 기간은 매 2주 1회 임상예찰 실시
 - 야생조류 AI 항원·항체 분리지역 주변 농가 주기적 예찰
 - 재래시장 닭·오리 판매업소와 중간유통상인 소유 가금류 예찰 강화
- 3) AI 방역관련법령 준수 지도·감독 및 불법 사례 단속 강화
 - 가금 사육농가의 소독설비 실태 주기적 점검 및 위반농가 처분
 - 가축·사료·분뇨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한 소독 실시 및 소독실시기록부 비치 여부 점검
 - 재래시장, 닭집 등에서의 불법적인 가금류 도축·판매 금지 지도 단속 강화
 - 농가 의무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불이익/인센티브 적용 철저
 - 4) 가금류 사육농가 중심 자율적 차단방역 강화
 - 출입하는 사람·차량·가축 등에 대한 소독 철저, 야생조류 출입 차단막 설치 등 “AI 차단방역 수칙(SOP)” 준수 철저
 - 잠복감염시 피해가 큰 종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산란율 등 일일점검 및 거래기록 작성 및 보존(발생시 추적 및 방역조치)
 - 지역별 공익수의사, 양계전문수의사, 방역지원본부 가축방역사 등 지역 여건에

밝은 인적자원을 활용한 예찰 강화

- 닭·오리 계열화업체에서 계열농가의 차단방역 활동 지도 관리

2. 초동방역능력 강화로 발생시 조기근절

- 1) AI 의심축 신고 즉시 고병원성 확진 대비 현장방역 실시
 - 의심축 신고 즉시 「초동방역팀」 1개조 (3~4명)를 현장에 파견, 시·군 방역부서와 합동 방역 추진
 - 발생농장 및 오염지역 농장내 방역 관계 공무원 상주 조치
 - 위험지역내에는 시·군 공무원을 농가별로 담당하게 하여 일일 임상관찰, 농가 소독지도 등 수행
- 2) 발생초기 군인·경찰을 방역지역내 이동통제소에 투입하여 철저한 이동통제를 실시케 함으로써 추가확산 차단
- 3) 금년도 AI 발생시 조기근절을 위해 새롭게 취했던 추가방역 조치를 발생초기단계부터 적용
 - 재래시장내 가금류 판매업소(시설) 사용제한 폐쇄 소독
 - 유통상인 닭·오리 수송차량 소독 및 실시여부 확인
 - 도축장 출하 닭·오리의 임상검사 증명서 휴대 의무화 등

3. AI 검진능력 제고 및 제도개선

- 1) 현장 방역 강화 및 신속한 검사를 위해 검사기관간 역할 개선
 - 시·도 가축방역기관 : AI 항원·항체 검사, 양성시 검역원에 고병원성 여부 확인 검사 의뢰
 - 수의과학검역원 : 고병원성 여부 확인검사 및 유전자 분석
- 2) 비전문 사육시설, 재래시장 닭·오리 등 방역취약 대상 관리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2008년말까지 개정 완료)
 - 허가받은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허용되는 가든형 식당에서의 도축 행위 금지 추진(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 관련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토종닭 도축용 소규모 도축장 건설 지원방안 마련
 - 오리사육업 등록대상 확대 및 종오리업 등록 신설(축산법 개정)
 - 사육업 등록(축사면적 기준) : (현행) 300㎡ → (개정) 50㎡
 - 종오리업 등록 신설 : 종축업에 종오리업 추가
- 3) 금번 방역과정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AI SOP” 개정
 - 의심축 신고 즉시 “초동방역팀” 배치, 오염지역내 농가별 공무원 배치 등을 통한


- 이동통제 강화
- 도심지, 소규모 사육농원(가정) 방역요령 (SOP) 추가
- 살처분·매몰방법 및 계분·사료 등 오염물건 처리방법 개선
- 재래시장에서의 AI 발생시 폐쇄 또는 사용제한 조치 등 세부방역실시요령 신설
- 역학조사 및 초동방역시 분변 운반차량 (처리시설) 우선 방역조치
- 차단방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금류 밀집사육형태 개선
- 언론의 방역상황에 대한 추측성 보도로 인한 국민의 오해와 불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계별 언론설명요령 마련

4) AI 방역담당 공무원 등의 방역능력 제고

- 농식품부 주관 AI 발생 대비 도상 연습 (CPX) 실시(10월)
 - 각 도별로 AI가 발생하지 않았던 시·군 3개소를 선정 실시
- 농업연수원 교육과정에 「AI 현장방역반」 과정을 신설하여 관련법령, 방역실시요령(SOP), 언론설명요령 등 교육
- “가축전염병 지역예찰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내 AI 관련정보 공유 및 상호 협조체계 구축

5) 기타 추진사항

-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른 AI 청정국가 선언 추진
 - AI가 마지막 발생된 경북 경산, 경남

- 양산 양계농가 및 오염지역의 살처분 및 소독조치가 완료된 5. 15일부터 3개월이 경과된 8. 15일 이후 가능
- AI 조기 수습과정을 백서로 만들어 관련 기관·단체에 제공하여 경험을 공유하고, 영문요약본을 UN 등을 통해 AI 발생 국가에 제공(국무총리 지시사항, 2008. 7. 1 국무회의시)
- 일반 국민에게 광우병, AI 등 인수공통질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염병바로알기 운동 전개” 연구 용역 실시(인수공통전염병학회, 2008. 8~12월)
- AI 방역과정에서 공로를 세운 군인, 경찰, 지자체 관계자, 민간인 등에 적절한 정부포상을 포함한 포상 수여(100여 점)
 - ※ 6. 17일자 유엔(UN) 언론보도에서 우리나라를 AI 방역 모범국가로 언급 

일생의 계획은 어린 시절에 달려 있고,
 일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달려 있다.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바랄 것이 없으며,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한 일이 없게 된다.
 - 공자